

서울특별시 「서울먹거리창업센터」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65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2년 8월 29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먹거리창업센터」는 농식품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여 입주공간 지원, 투자유치, 전문가 컨설팅, 기술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통해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,
- 나.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형 민간재위탁을 통해 입주기업의 육성 및 보육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먹거리창업센터(개소일자 : '16. 12. 7.)
- 위치 : 강동구 천호대로 1139(강동그린타워 8,9층)
- 규모 : 연면적 3,123㎡
- 수탁기관 : (주)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(대표 : 목영두)
- 운영인력 : 센터장 포함 4명
- '22년 예산 : 862,913천원(민간위탁금)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 :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운영
- 위탁기간 : '22. 10. 1. ~ '25. 9. 30.(3년)
- 위탁유형 : 시설형 민간위탁
- 위탁업무
 - 서울먹거리창업센터 시설 및 물품관리
 - 농식품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입주자 모집 및 선정
 - 기술·마케팅·판로지원 등 육성 프로그램 개발 운영
 - 기업입주 사무공간, 교육장, 시제품 제작실 등 운영
 - 기타 창업 정책 사업
- 소요예산 : 1,795,526천원(3년)
 - '23년 579,770천원, '24년 595,356천원, '25년 620,400천원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- 민간위탁 추진근거
 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 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 제18조
- 민간위탁 추진현황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6.10.24.~'19. 9.30.	(주)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	공개모집	최초위탁
2차	'19.10. 1.~'22. 9.30.	(주)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	재계약	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- 서울먹거리창업센터는 먹거리분야 창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입주기업의 제품개발, 판로개척, 투자유치 확대 등의 노하우가 축적된 농식품 창업기업의 육성에 지원 기반과 추진역량이 있는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·운영할 필요가 있음

- 현 수탁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,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

제4조(시장의 책무)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업의 활성화와 기술창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법·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창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대학생, 제대군인 등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8조(창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등)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에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○ 제4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2. 6. 30.개최) : **적정**

※ 작성자 : 농수산유통담당관 농수산정책팀 김두만 (☎ 2133-4453)